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종근*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lind Zones in View of Safety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New Multi-purpose Business

Jongkeun Park*

[†]Corresponding Author

Jongkeun Park
Tel : +82-42-670-9732
E-mail : jkpark@hit.ac.kr

Received : February 26, 2019

Revised : April 30, 2019

Accepted : June 10, 2019

Abstract :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for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excluding 23 multi-purpose business types,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large number of casualties in case of fire accident. At present, the new multi-purpose business can start its operation only with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licensing agencies and registration to the tax agency, and it is difficult that the fire department, which is a competent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makes intervention them in the same way as before. In addition, as the licensing agency has no authority to restrict the business due to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a lot of civil complaints occur,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changing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rapid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 type of new multi-use facility and characteristics of fire risk.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blind zones in the safety management, which enables the multi-purpose business to be opera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Copyright©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All right reserved.

Key Words : multi-purpose business, the blind zones, safety laws and regulations, fire risk

1. 서론

현대사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양한 영업 형태의 신종이용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23개 다중이용업소 이외의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재 사고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허가청의 행정행위와 세무기관의 등록만으로 영업의 개시가 가능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와는 달리 안전관리부서인 소방관서에서의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허가청에서도 안전 확보의 미비를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권한

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DVD방, PC방, 오락실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각종 안전점검 등의 범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방탈출카페와 같은 신규 다중이용업종은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점검,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요인에 취약한 실정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위험특성 및 안전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교수 (Disaster Construction Safety Division,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2.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2.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 현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 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23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을 발급받아 관련 영업허가 등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²⁾.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누적 화재건수는 Table 1과 같이 3,135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6%인 반면, 인명피해는 199명(사망16, 부상183)로 전체 인명피해의 1.86%를 차지한다³⁾.

Table 1. Status of outbreak of fire of multi-purpose business

Type	General architecture		Multi-purpose business	
	A[1]	B[2]	A[1]	B[2]
합계	211,958	10,480	3,135	199
	98.54%	98.14%	1.46%	1.86%
'17	43,571	2,174	607	23
'16	42,621	1,957	792	67
'15	43,884	2,058	551	35
'14	41,549	2,154	586	27
'13	40,333	2,137	599	47

[1] Number of fire outbreak

[2] Human casualty of multi-purpose business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Fig. 1과 같이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유흥주점, 고시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순이고, 구획된 실로 인한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음주, 취침,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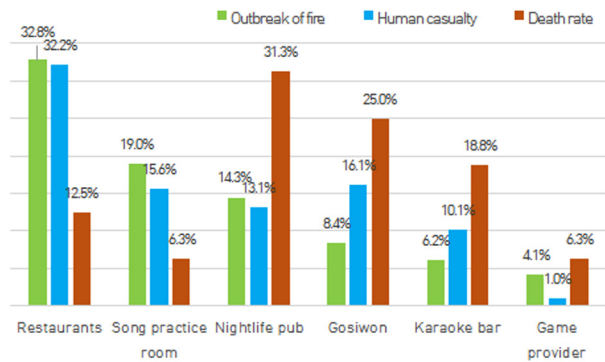


Fig. 1. Risk Analysis by business type for the last 5 years.

하지만, 기존 23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및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2.2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특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허가청의 행정행위와 세무기관의 등록만으로 영업의 개시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안전관리부서인 소방관서에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적인 간섭이 곤란하다.

민원의 관점에서 안전 확보라는 대의명분과 업주의 이익이라는 적대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규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허가청 등에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허가청에서도 안전 확보의 미비를 이유로 영업을 제한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과의 마찰 및 신속한 법률의 보완 및 정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³⁾.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일부 법령을 정비하여 보완하는 등 안전 확보 및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용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생성되어 확산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3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1990년을 전후하여 생활환경의 변화 및 경제여건이 풍족해지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의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소방안전관리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안전관리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수차례 법령 개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업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안전관리부서인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인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고 영업허가와 관련한 주무부서 및 세무관련 부서에서도 허가를 목적으로 안전규제를 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무리한 규제를 할 경우 업주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

Table 2. Type of new multi-purpose business

Biz type	Services
Screen indoor baseball stadium	When the ball flew in line with the pitching motion of the pitcher, the user will hit the ball and experience the movement of the ball on the screen in real time (approximately 450 balls as of February, 2018)
Indoor archery station	Users can experience archery with archery equipment such as bow, arm guard, chest guard, and protective gear at a distance of 10 ~ 30 m indoors (about 160 archeries in April 2018)
Room escape game cafe	Users are locked in a closed room (detective room, fear room, etc.) for 1 to 2 hours, and solving questions with a hint before escaping from the room (about 280 as of at the end of 2017)
Kids cafe	It is comprehensive children's playgrounds where amusement rides and organic gear are placed to experienc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and their parents
VR room	It is a combination of PC room and VR, which is new marketing item of PC room that faces revenue stagnation and growth limit
24 hour music studio	Various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are available 24 hours a day at a fixed rate for practicing musical instruments that are not allowed to play at home, and sleeping and cooking facility provided.

명을 발급받는 다중이용업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접객업소로 영업행위를 하여 이윤을 추구하여도 안전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상당수 존재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음 Table 2와 같다.

2.4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제도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출현하고, 영업소의 형태도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되는 등 다중이용업소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현재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제도가 없어서 화재발생시 다수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의식과 영업주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을 열거하게 되면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구체적인 업종은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5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제도적 현황

새로운 유형의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계속적으로 생

성되고 있으나 허가, 신고 등 사전규제 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출현할 때마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처간 상시 협의체의 미구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탄력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면 신종 다중이용업소 출현 시 관할 허가청이 의무적으로 소방관서의 협의를 거쳐, 유사업태에 대하여 문제발생전인 영업허가 즉시 다중이용업소로 적용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남성피부마사지방 간판으로 불법 영업중인 퇴폐, 변태 업소가 있다면 소방관서에서 실내구조 확인 후 즉시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 포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소방법 중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확인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2.6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관리제도의 문제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23개 다중이용업소 이외의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화재 사고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증대됨은 물론 민원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3개 업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발생하면 안전 관리에 관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23개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되어 있어 의무적인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일련번호의 부여가 불가능하여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일반 화재보험의 가입만이 가능하며 이를 별도로 가입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수 또한 극소수이어서 화재로 인한 피해의 보전이 요원하다⁴⁾.

3.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3.1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Table 3과 같이 소관부처 및 법령상 규제근거가 없어 허가등록 등 절차 없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해 정확한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예방관리 사각지대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다.

젊은 층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점차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VR방, 방탈출카페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새로운 놀이공간이지만 공간에 대한 안전시설 구

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VR방, 방탈출카페는 보통 매장 내에 테마 별로 방이 마련돼 있다. 다만, VR방은 유리창이 포함된 가벽, 방탈출카페는 밀실이라는 차이가 있고, 6개에서 8개 이상의 방들이 서로 붙어 있어 답장을 방불케 한다⁵⁾.

화재에 취약한 구조, 비상구 등 안내표시도 없는 매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신종놀이업소들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자유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종합정밀검사, 소방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각 실마다 비상벨,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소방당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완비증명’을 확인받은 뒤 개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종업종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 업소들을 마땅히 강제할만한 규제나 법령이 없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스크린야구장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안전 기준 마련 필요하고, 방탈출카페, 24시간 음악 연습실, 키즈카페 등의 경우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소방점검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Table 3. Blind zones in safety management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Types	Risks and safety blind zones of New multi-purpose business
Com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ce new multi-purpose business registers as 'service business' in the tax office or city hall or office under the jurisdiction, but does not file to fire department, it raises blind areas in safety inspection. • Blind zones are found in obligatory safety management consists of firefighting, comprehensive inspection, completion of firefighting training for all employees, flame proofing facility, and fire liability insurance.
Room escape game c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are many wooden panels in the small space, and there is no emergency exit mark in dark environment. • In case of fire outbreak outside the game cafe, doors cannot not open from inside unless doors are not open from outside of the cafe due to its structure. So in case of fire, there is a high risk of death and there is no applicable fire safety regulations for this facility.
Screen indoor baseball stad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ty facilities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formulated for the screen golf business such as playing position, waiting seats, ceiling height, ceiling height etc, but safety laws and regulations for screen indoor baseball stadium have not been formulated. Thus there is no safety regulations to inspect them even if users play games without wearing protective gear.
Kids c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stallation of children's amusement facilities and organic apparatuses of indoor facilities are controlled by Safety management law (Law) for children's amusement facilities” and “Tourism Promotion A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operations of such facility are controlled by “Food and hospitality business (Food Hygiene Business)” or “other amusement facilities (Tourism Promotion Law)” • In order to solve blind zones of kids café, it may nee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Firefighting Act” for children's cafes including placement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o strengthen the use of flame proofing materials and posting or notifying evacuation exit guidance, or to designate as a multi-purpos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Law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es”.
24 hour music stu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24-hour music studio is actually a residential area, but it is not applicable to the multi-use facility. Thus, it is blind zone of safety management. • Since the music studio is not applicable to the multi-use facility, so it is not subject to inspection by the firefighting department, and the owner of the multi-use facility has no obligation to autonomously perform the fire safety check more than once per quarter

4.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법령이 상충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의 개선,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총 7가지의 안전사각지대 개선방안을 Table 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 Countermeasures to solve blind zones of safety management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Revisions	Countermeasures to solve blind zones of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or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that are contradictory with the ones of other mini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endment draft to the law for the designation of new multi-use businesses • Measures to resolve the blind zones between the laws on new multi-use businesses • Establishment of confirmation procedure of certificate of safety facilities for the new multi-use businesses • Improvement in the application scope adjustment of the new multi-use businesses under the Building Law • Improvement in the permission scope adjustment under the Food Hygiene Law
Revision of unreasonable laws and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ment in the reconciliation of the scope of new multi-use businesses under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 Improvement in the fire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new multi-use businesses

4.1 부처 간 법령이 상충되거나 장비가 필요한 법령 개선

4.1.1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위한 법 개정안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23종 다중이용업소 이외에 사회적 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위험평가결과 Table 5와 같이 위험유발지수가 기준 이상이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기존 3개에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Table 5.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 (Multi-purpose business) revision (draft)

Article 2, Current enforcement rule	Article 2, Revised enforcement rule (draft)
1. How to voice call · How to video call	1. How to voice call · How to video call
2. Sleeping method	2. Sleeping method
3. Colatec business	3. Colatec business
	4. Room escape game cafe(new)
	5. Kids cafe(new)

4.1.2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간 상충으로 인한 사각지대 개선방안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실내 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 두 법률 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⁶⁾. 이에 소방시설법상 기존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도 다중특별법을 따르도록 법률을 조정하여 법률간 상충으로 인한 안전기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4.1.3 전기사업법상 신종 다중이용업의 범위 일치화 개선

전기사업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은 영업개시 전과 영업개시 후, 소규모빌딩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영업개시 후, 대규모빌딩은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자가 실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상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4.1.4 건축법상 신종 다중이용업소 용도범위 조정 개선

최근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감성주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맞는 피난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⁷⁾. 따라서, 감성주점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위락시설로 분류함으로써 피난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혼잡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위락시설의 특성상 수용인원이 많아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피난계단을 추가하여 건축물의 피난성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적용되는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위락시설 중 감성주점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4.1.5 식품위생법상 허가범위 조정 개선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감성주점의 경우 사실상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을 범위에 추가하여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성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4.2 불합리한 제도 개선

4.2.1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 개선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시행(13.2.23)되어 운영 중이며, 보험료는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을 기초로 단순하게 책정된다. 이에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다중이용업주와 그렇지 않은 신종 다중이용업주 간에 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유무와 화재사고 이력 등을 보험료 산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에 대한 할인할증 제도는 다중이용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사고이력이 없는 곳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케 함으로써 보험가입자 간의 보험료 납입의 형평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화재예방의식의 고취는 궁극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뿐 아니라 보험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2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완비증명 확인절차 신설

현행 다중이용업의 경우 개별법령상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확인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다수 다중이용업의 경우 개별법령에도 상기조항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업자가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안전시설 등의 확인증명에 대한 설치의무의 규정이 없어, 영업신고 후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개별법령상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해당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⁸⁾.

「풍속영업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키스방, 전화방, 귀 청소방 등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신종 다중

이용업종에 대한 구체적 시설기준이 없어 소방안전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시설기준을 정하여 잠재적인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기술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풍속영업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신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포괄적 개념(가이드라인)의 안내 및 해당업종의 소방관서 통보 등의 방안이 조화롭게 이뤄지면 신종다중이용업소가 시설 공사전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준비함으로써 여러 경제적 손실발생을 줄일 수 있다.

5. 결론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24시간 음악연습실 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 다중이용업 대상범위의 확대 및 복잡한 공간형상을 가진 신종 다중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인명 안전대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등 소방 안전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가장 취약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및 교육체제의 강화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적인 행정력만으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종 다중이용업소 규정의 문제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3개 다중이용업소에서만 의무적 가입이 가능하며,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 또한 가입하는 업소가 극소수여서 화재로 인한 피해 보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신속하게 제도권으로 편

입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새롭게 생겨나는 신중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실내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소’에 대하여 상대적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법적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신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분석 결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중 다중이용업소는 소관부처 및 법령상 규제근거가 없어 허가등록 등의 절차 없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해 정확한 안전관리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24시간 음악 연습실뿐만 아니라 신중 다중이용업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 및 개선하여야 할 안전 사각지대를 제시하였다.

넷째, 신중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 및 안전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 ‘타 부처 법령과 상충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 정비’와 ‘불합리한 제도’로 구분하여 총 7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개 개선(안)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된다면 신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대전보건대학교 2018학년도 교내 연구비[일반과제]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Anti-Corruption and Citizens' Rights Commission, Improvement to solve Blind Zone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Life of Public, pp. 4-5, 2018.
- 2) J. C. Lee, “Analysis of the Cause of Fire and Fire Safety Service for Multiple Complex”,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Kyungil University, pp. 58-59, 2012.
- 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 Statistical Yearbook, 2013~2017.
- 4) D. H. Kim, “A Study on the Fire Safety of Entertainment Service Building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Asan, pp. 31-35, 2005.
- 5) S. W. Kim, “Safety Blind Zones of VR Room and Room Escape Game Café and Other New Game Rooms, Herald Economy, 2018.
- 6) Y. B. Jin,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Establishmen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p. 1-4, 2013.
- 7) S. J. Choi, Blind Zones of Safety Management' for New Playground Business of Free Service Business, Good Morning Chungcheong, 2018(www.goodmorningcc.com).
- 8) S. Y. Shin, Y. S. Lee and Y. J. Park, Multi-purpose Business, etc., Investigation of Fire Safety, The Seoul Institute, pp. 1-7, 2015.
- 9) S. J. Han, “A Study on Fire Safety Management of the New Multi Shop, Master's thesis, Industry & Environment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pp 21-30, 2018.
- 10) National Fire Service, Promotion of Strengthening Fire Safety for Multi-purpose Business Including Gosiwon and Others, Fire Department Press Release, pp. 4-5, 2018.